

의안번호	2218793
의 퇴 인	이성권 의원
회 답 일	2026. 5. 7.
추계번호	26F25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6.2억원에서 2028년 6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8.7억원(연평균 6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8조제2항)	-6.2	-6.2	-6.2	-18.7	-6.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8조제2항 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)	-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8조제2항 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됨에 따라,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(안 제88조제2항)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2년 감면 재개 이후 2024년에 최초로 감면실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,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감면실적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2024년 취득세 감면액: 4.5억원
 - (재산세)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1.7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100% 감면(최소납부세 적용으로 85% 감면)
 - 취득세 200만원, 재산세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%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(지특법 제177조의2제1항)
 - 감면연혁: 2014년 일몰적용으로 감면 중지, 2022년 이후 감면 재개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(추계방법)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2년 감면 재개 이후 2024년에 최초로 감면실적이 발생한 점

을 고려하여,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감면실적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2024년 취득세 감면액: 4.5억원
- (재산세) 감면액의 변동에 뚜렷한 추세가 없어,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1.7억원

[표 2] 한국자유총연맹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
감면실적	2.0	1.3	6.4
- 취득세	0.0	0.0	4.5
- 재산세	2.0	1.3	1.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6.2억원에서 2028년 6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8.7억원(연평균 6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자유총연맹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8조제2항)	-6.2	-6.2	-6.2	-18.7	-6.2
- 취득세	-4.5	-4.5	-4.5	-13.5	-4.5
- 재산세	-1.7	-1.7	-1.7	-5.1	-1.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